

2020년도 제6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5. 6.(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재화,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6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172건(안건번호 제2020-18021호~19035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8021호~18026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영화 저작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8027호는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가 2013. 5. 방송물 스틸컷 1장을 게시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약 7년 전 게시된 것으로 시정권고 제도의 주된 목적인 '불법복제물 확산을 조기에 차단'과는 거리가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18028호, 18029호는 블로그 이용자가 '뮤지컬 자료를 교환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사안임.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 정보 판단에 관한 심의 기준 정립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해당 안건들을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안건번호 제2020-18030호는 음원의 일부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한 사안임. 이용목적, 분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의대상 게시물의 음원 이용은 공정이용 등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음원의 합법 시장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0-18031호~18034호는 블로그에 일본 가수의 음원, 실연영상 등을 올린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18035호는 민원인이 제품판매를 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민원인이 촬영한 사진 외에도 다른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이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0-18036호~1806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과 제품키, 크랙파일 등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18063호는 카페에서 개봉 예정 영화 전체분량을 전송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전 게시물 2,123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236건 (안전번호 제2020-1788호~2023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202개 안건은 가결하고, 나머지 34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21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5개 안건 (2개 안건은 부결 사유가 중복)}은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6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6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2쪽의 게시물 내용, 6쪽의 제출 자료, 자료 내용, 저작물명, 게시물 내용, 7쪽의 저작물명, 자막 파일 내용, 제출 자료, 8쪽의 게시물 내용, 저작물명, 자료 내용, 9쪽의 게시물 내용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 B 위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함. 민원인 신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류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C 위원: 같은 의견임.
- D 위원: 같은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

(안전번호 제2020-18026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0-18021호와 다른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 ☆☆’을 판매 하고 있음. 해당 영화는 ‘○○○○’에서 최근 공개되었고, 불법복제물 에 대한 심의 요청이 많이 되고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18021호~1802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작지 않아 보임.
- C 위원: 모두 시정권고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같은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8021호~1802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 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 호 제2020-18027호는 저작재산권자로 보이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가 ‘♥♥♥ ♥♥♥’ 게시판에 ‘◆◆◆ ◆◆ ◆◆◆ ◆ ◆◆◆◆’의 스틸컷 1장을 올린 사안임. 민원인은 커뮤니티 사이트 하 단에 기재된 “저작권 보호 요청 및 게시물 삭제 요청” 메일주소로 수차례 삭제 요청을 하였으나 사이트 운영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ㄱㄱㄱㄱ ㄱ ㄱㄱㄱㄱㄱ. ㄱㄱㄱㄱ ㄱㄱㄱ. ㄱㄱㄱ ㄱㄱㄱㄱ ㄱ ㄱㄱ ㄱ
ㄱㄱ ㄱㄱ ㄱㄱㄱㄱㄱ.”와 같은 글을 블로그에 올린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
물 하단에는 1개의 비밀댓글이 달려 있음.

(안전번호 제2020-18029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한편 안전번호 제2020-18029호 심의대상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라는 팝업창이 뜨고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음. 팝
업창에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들을 확인할
수 있음. 해당 블로그의 목록을 보면 2020. 5. 4., 2020. 5. 2. 등의 일
자에 업로드된 “♡♡♡ ♡♡ ♡♡” 게시물들을 확인할 수 있음. 게시
자는 20시간 전에도 게시물을 업로드한 것으로 보임.

(2020. 5. 4.에 업로드된 다른 게시물을 보여주면서)게시물 하단에는
2개의 비밀댓글이 달려 있음.

(2019. 9. 2.에 업로드된 다른 게시물을 보여주면서)게시물 하단에는
다수의 비밀댓글이 달려 있음. 해당 게시자는 본문을 계속 수정, 삭
제,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은 아니지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
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우리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
는 경우에 한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
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심의위원회는 직접증거 없이 댓글 내용, 댓글 개수와 같은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만으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인정하여 시정
권고를 가결할 수 있음. 다만 불법복제물 전송과 관련성이 깊은 간
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한편, 저작권법에 따라 공중에게 저작물을 이용 제공하는 경우라야
‘전송’에 해당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댓글이 비밀댓글로 작성되어 실제로 배포, 전송

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아니함.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참고로 안건번호 제2020-18028호, 18029호와 유사한 안건이 전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D 위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이후에 공연 산업의 콘텐츠 비즈니스가 온라인으로 전환이 이루어져 뮤지컬 공연을 온라인으로 합법 시장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었을 것으로 봄. 뮤지컬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시장이 커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그동안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소명 정도에 따라 심의해왔는데 정책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 해당 안건을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C 위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이후로 공연 예술 산업에서 온라인 공연으로 비즈니스 모델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 온라인 공연은 녹화 후 사이트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 시정권고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함. 전체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회부할 때 '온라인 공연'에 주안점을 두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어제 가수 '박진영'이 자신의 작년 연말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무료 공개하겠다는 뉴스를 보았음.
- B 위원: 해당 사안이 정확히 불법복제물등의 전송에 관한 사안인지?
- C 위원: 해당 안건은 불법복제물등에 관한 사안임. 물론 해당 안건

이 온라인 공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위원회에서 온라인 공연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공연 예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임.

- B 위원: 해당 안건은 비밀댓글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시정권고의 어려움이 있음.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에서 교환을 원하면 댓글을 달아달라는 요청이 있고 이때 댓글이 달려 있다면 그 비밀댓글은 '교환'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C 위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함. 다만 종전의 위원회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관련 사안에 대해 부결해왔고 비밀댓글의 경우에는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 종전의 입장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해당 안건을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자는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과거에 비밀댓글이 달려 있는 사안이 시정권고 가결이 되었을 때는 합정수사는 아니지만 보호원 직원이 직접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을 받아 재생하는 것까지 자료로 제출된 경우임. 다만 현재는 비밀댓글 관련 안건이 많아져 제한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B 위원: 특별한 이견이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18028호, 1802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뮤지컬 공연물을 불법 녹화하여 전송한 사안은 전체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B 위원: 비밀댓글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필요함.
- C 위원: 해당 사안은 직접증거만으로는 불법복제물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비밀댓글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밀댓글과 같은 간접증거 등을 불법복제물등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해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A 위원: 같은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8028호, 18029호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8030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 동호회 카페 회원이 ○○ ○○○를 직접 작동하는 영상물을 만들면서 배경음악으로 2012. 12. 발매된 약 4분 분량의 '★★★★ ★★★★★' 음원의 일부를 이용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의 재생 시간은 총 49초이며, 해당 음원은 11초부터 44초까지 약 33초 이용되었음.
이용목적, 분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의대상 게시물의 음원 이용은 공정이용 등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은 취미로 만든 것으로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음원의 합법 시장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 D 위원: 동영상에서 음원의 일부를 사용한 사안에 대해서 보호원에서 조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 등에서 사용료를 받지 않는지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그 이후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음원의 합법 시장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를

안건번호 제2020-18031호, 18032호는 일본가수 '㉠㉠ ㉠㉠'가 실연한 mp3 음원 파일 4곡을 첨부파일로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0-18031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 음원 파일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아보겠음.

(해당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실제로 해당 음원 파일은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재생도 됨. 해당 음원 파일은 3분 58초 분량임.

(안건번호 제2020-18033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영상물을 재생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8033호는 일본가수 '㉠㉠ ㉠㉠'가 일본 '㉠㉠㉠㉠'의 음악 버라이어티 쇼에 출연해 '▽▽▽▽ ▽▽ ▽▽ ▽'을 실연한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약 2분 45초 분량이며, 재생 횟수는 126회임.

(안건번호 제2020-18034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영상물을 재생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8034호는 일본가수 '●●●●●●'의 '○○○○○○○○○○○○○○○○ ○○○○○○○○○○○○○○○ ○○○○○○○○○○○○○○○ ○○○○○○○○○○○○○○○' 영상 중 일부분인 12분 50초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영상물은 가수의 인터뷰 부분과 '㉠㉠㉠㉠㉠㉠ ㉠㉠㉠㉠㉠㉠' 실연 부분인 약 5분 31초로 구성되어 있음. 해당 블로그명은 '▼▼▼▼▼ ▼▼▼ ▼▼▼'로 해당 일본가수의 팬이 운영하는 블로그로 보임.

참고로 일본가수 '㉠㉠ ㉠㉠'의 음원, '●●●●●●'의 음원과 공연실황 DVD는 아마존 재팬 등에서 판매 중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18031호~18034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해당 음원들은 합법 시장에서 판매 중임.

광고용 제품사진에 창작이 일부 개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품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한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보고드리겠음.

한편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민원인이 촬영한 사진 외에 다른 콘텐츠까지 함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되므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1803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사진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사진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으로 보이고 해당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하지 않아 보임.
- D 위원: 같은 생각이며,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
- C 위원: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803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18036호~1806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오토데스크사의 'Inventor', 'AutoCAD', 'AutoCAD Mechanical', 'Civil 3D', 'Navisworks', 어도비사의 'illustrator', 'Photoshop', 구글사의 'SketchUp pro', 한글과 컴퓨터사의 '한글', '한컴오피스', 다쏘사의 'SolidWorks' 등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총 27건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Inventor, CAD, CAD Mechanical, Civil, Navisworks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오토데스크', illustrator, Photoshop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어도비', SketchUp Pro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구글', 한글,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한글과컴퓨터', SolidWorks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다쏘는 각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복제물이 정품 프로그램 또는 각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체험용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안전번호 제2020-18036호~18062호 소프트웨어 복제물은 자동인증, 크랙파일 또는 제품키 등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소프트웨어들은 비교적 최신 저작물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18036호~1806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들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됨.

- D 위원: 이견이 없음.

- B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8036호~1806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18063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민원인은 2020. 4. 22. 영화 '■ ■■■'에 대한 보호요청을 했으며, 보호요청과 별개로 심의대상 게시물을 이메일로 신고하였음. 참고로 해당 영화는 ■■■■■■ ■■■ ■■■ 국내 개봉예정임.

(안전번호 제2020-18063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카페에서 개봉예정 영화 한 편 전체 분량을 전송할 경우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2020. 4. 28. 현재 삭제된 상태임. 해당 카페 회원수는 59,105명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1806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삭제되어 있어 경고의 시정권고가 타당해 보임.

- B 위원: 같은 생각임.

- D 위원: 복제·전송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가 있음.
- A 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8063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8064호~19035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음악 ‘METEOR (가수: 창모 (CHANGMO))’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8530호의 음원파일은 2019. 11. 29. 발매된 곡으로 앨범 ‘Boyhood’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멜론 2020년 04월 25일 실시간 TOP 100 [16시 기준] [고음질 320k]’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100곡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음원의 실연자는 작사, 작곡, 편곡을 하였음.
(음악 ‘Psycho (가수: Red Velvet (레드벨벳))’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8541호의 음원파일은 2019. 12. 23. 발매된 곡으로 앨범 “‘The ReVe Festival’ Finale’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멜론 2020년 04월 26일 실시간 TOP 100’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100곡을 이용할 수 있음.
(영화 ‘인비저블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8614호는 2020. 2. 26.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28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5. 4.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3. 20.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영화 ‘사냥의 시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8632

호는 '넷플릭스'에서 2020. 4. 23. 공개된 영화를 웹하드에서 187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음악 '시작 (가수: 가호 (Gaho))'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8695호의 음원파일은 2020. 2. 1. 발매된 곡으로 앨범 '이태원 클라쓰 OST Part 2'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Melon]2020년 03월 18일 TOP'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100곡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압축 파일은 45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영화 '마이 스파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8831호는 2020. 4. 29.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30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5. 4.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상물에는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안건의 모니터링 날짜는 2020. 4. 10.임. 게시자는 국내 정식 개봉 전인 영화를 복제·전송한 것으로 보임. 최근 해당 영화의 불법복제물이 웹하드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음.

(방송 '슬기로운 의사생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8895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7화'를 9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방송물은 tvN 채널에서 2020. 3. 12.부터 목요일 오후 9시에 방영 중인 총 12부작 드라마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18064호~1903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보임.
- B 위원: 모두 불법복제물의 전송에 대한 사안임.
- D 위원: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임.

- C 위원: 해당 사안들 모두 시정권고를 하되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8064호~19035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8027호, 제2020-18030호, 제2020-18035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18028호, 제2020-18029호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안전번호 제2020-18021호~18026호, 제2020-18031호~18034호, 제2020-18036호~19035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22쪽부터 3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788호~2023호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202개의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되, 나머지 34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21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5개 안건(부결 사유 중복 2건)}은 부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6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6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5. 13.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